〈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30100463]　　[www.dakchong.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3-06-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0-25]

[닭강정총각]

정 보 공 개 서

[이심전심(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04 . .

[이심전심(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4층(한남동, 세화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3785-142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3785-142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3785-1425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심전심(주)	닭강정총각 외 3개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4층(한남동, 세화빌딩)			
	법인 설립등기일①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08.30.	2012.09.21.	심 규 태	02-3785-1425	02-3785-1423
	법인등록번호	110111-4949545	사업자등록번호	106-86-8885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①	영업표지	주 소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심 규 태	닭강정총각 외 3개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4층(한남동 세화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 규 태	02-3785-1425	02-3785-142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이 은 희	닭강정총각 외 3개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4층(한남동 세화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 규 태	02-3785-1425	02-3785-142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이 효 영	닭강정총각 외 3개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4층(한남동 세화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 규 태	02-3785-1425	02-3785-142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④	주 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이심전심에프엔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4층 402호(한남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심 규 태	02-3785-1435	02-3785-1423
	법인등록번호	110111-5120285	사업자등록번호	201-86-3290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닭강정총각]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①	닭강정총각	
상 호②	닭강정총각 OO점	
상표(서비스표)③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247380호
광 고④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①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676,604	522,232	154,372	992,983	-255,221	-145,648
2022년	982,867	756,470	226,397	1.753,092	-15,986	72,023
2023년	1,105,132	793,359	311,773	1,797,215	79,258	85,376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에서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은 경영하지 않아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 전체 입니다.]

[당사는 가맹사업(킹오브떡볶이(2021년 영업표지변경), 닭강정총각, 한남동그집, 파치비)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도 설립되어 '킹오브떡볶이(2021년 영업표지변경)', '한남동그집' 과 관련 된 가맹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 하였으며, 2021년, 2022년, 2023년도 매출구분에 있어, 한남동그집'과 '파치비' 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으로 기재하고, "닭강정총각"의 매출은 없기에, 나머지 매출은 모두 '킹오브떡볶이(2021년 영업표지변경)' 관련 매출로 기재하였습니다. '파치비'은 2020년 11월 06일 신규등록하여(등록번호 20201488) 사업을 진행 하여 2022년부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① 명단 및 사업경력②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심규태	대표이사	2012.09.~현재	이심전심(주) 대표이사	경영총괄
			2013.04~현재	(주)이심전심에프앤비 대표이사	경영총괄
	이은희	이사	2012.09.~현재	이심전심(주) 이사	경영전반 총괄
	이효영	이사	2015.09.~현재	이심전심(주) 이사	법무,회계
			2013.04~현재	(주)이심전심에프앤비 이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①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①	사업내용②
가맹본부	이심전심(주)	가맹사업 경영	2012.09.~현재	닭강정총각(등록번호: 20120100670)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3.2.~현재	킹오브떡볶이(등록번호:20130100463) 이라는 분식 가맹사업 경영 / 2021년 영업표지변경
		가맹사업 경영	2013.2.~현재	한남동그집(등록번호:20130100171) 이라는 주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11.~현재	파치비(등록번호:20201488)라는 영업표지의 파스타,치킨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6.06 ~ 2019.04 더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자진 취소 신청	분식집이다(등록번호:20161172) 라는 영업표지의 분식 가맹사업 경영(자진등록취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이심전심 에프엔비/대표이사 심규태	가맹사업 상품공급	2013.05.~현재	킹오브떡볶이와 파치비의 가맹사업 상품 공급을 하는 계열회사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②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③)
닭강정총각 (상표권)	영업표지의 사용	2012.12.20. 등록	등록 제41-0247380	이심전심(주)	2032.12.2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닭강정총각] 가맹사업 현황

1. 〔닭강정총각〕을 시작한 날: 2012년 12월 2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직영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 〔닭강정총각〕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심전심(주)	닭강정총각	심규태	2013.04.16. ~ 현재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3층(한남동, 세화빌딩)
이심전심(주)	닭강정총각	심규태	2013.04.16. ~ 현재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7, 4층(한남동, 세화빌딩)

3. 〔닭강정총각〕 업종

영업표지	업종	
닭강정총각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닭고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닭강정총각]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닭강정총각]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①	계약 해지②	명의 변경③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닭강정총각]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2]를 확인하십시오.④

6. [닭강정총각]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닭강정총각]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①	가맹점/직영점의 수②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이심전심(주)	킹오브떡볶이	20130100463	분식	19/0	9/0	6/0
가맹본부	이심전심(주)	한남동그집	20130100171	주류	51/0	61/0	70/0
가맹본부	이심전심(주)	닭강정총각	20120100670	치킨	0/0	0/0	0/0
가맹본부	이심전심(주)	파치비	20201488	양식	0/0	1/0	1/0
가맹본부	이심전심(주)	분식집이다	20161172(자진등록취소)	분식	0/0	0/0	0/0

[당사는 2023년말까지 최근 3개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킹오브떡볶이 외, 한남동그집, 닭강정총각,파치비(2020년 11월 06일 신규등록),분식집이다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영업표지 킹오브떡볶이의 경우 영업표지를 변경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상표등록을 통해 가맹점의 영업표지 사용에 상호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 분식집이다는 2019년 4월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하지 않아 정보공개서 자진등록취소 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①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②

[닭강정총각]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③.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④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⑥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⑦	-	해당없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추정비율(45%)]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45%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서 공급하는 물품공급의 비율이 일정치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당사 물품 사용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관계로 그 추정치 마져 환산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년 가맹점은 2곳 모두 12월 31일 기준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신규로 계약되어 운영되는 매장이 없어, 연간평균 매출액 산정에 있어,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연간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 이심전심(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닭강정총각]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닭강정총각]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①	평균 영업기간②
2023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닭강정초각 평균 영업기간은 2017 전국 가맹점의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이 진행 되지 않아 2023년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의 일반 정보

당사는 [닭강정총각]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②	상호/명칭③	주 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닭강정총각]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5]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①	수단②	기간③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71,851	71,851	-	
광고	소계		71,851	71,851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연중	71,851	71,851	-	**(비공개)**
판촉	소계		-	-	-	

※ 인터넷 광고비용은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로 당사가 운영하는 킹오브떡볶이, 닭강정총각, 한남동그집, 파치비의 광고비용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영업표지별 구분이 되지 않아 합계 비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사를 통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을 하여, 가맹금을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로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이심전심(주)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 ] 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②	조치일자③	조치내용④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닭강정총각]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로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 / 확정 금액
보증금	받고있지 않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금액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6,600]				
가입비	5,500	계약체결시 입금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노하우 전수와 오픈 지원 완료시 소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로 당사에 직접 입금
교육비	1,100	교육입교전	교육 입교전까지 계약해지	교육이후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계약이행금					받고있지 않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이 오픈 전에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에 의한 소멸되지 않은 비용 중 아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맹금을 반환한다. <관련 가맹계약 제14조>

가. 가맹계약 후 24시간 이내 해지할 경우는 소멸되지 않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가맹금 등의 100%.

나. 가맹계약 후 2일~30일 미만에 해지할 경우는 소멸되지 않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가맹금 등의

50%.
다. 가맹계약 후 30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는 소멸되지 않은 제7조 제1항에 의한 가맹금 등의 3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①	금액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③	비고
총계	[-]			
(현금)보증금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당사는 II-9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가맹금을 예치시키지 않고 당사로 직접 입금시켜야 합니다.

※ 단, 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시 가맹본부는 보증금 관련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6,600
가입비	5,500
교육비	1,100
개점행사비	-
(현금)보증금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지급대상②	금액③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④
총계		[28,350～33,800]	[2,835~3,38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14,800(보통형) 17,600(고급형)	1,480(보통형) 1,760(고급형)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 3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485천원 추가부담(보통형, 고급형의 경우 1,760천원)
주방설비	**협력업체**	8,800	880	공급 및 설치 전	공급 및 설치 이전	33㎡ 기준
인테리어 (간판)	**협력업체**	1,650~2,750	해당없음	착공 3일전	상품 미공급시	외부간판 면적 및 설치 개소에 따라 다름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이심전심(주)	1,100~1,650	해당없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소모품비, 등 주문량에 따라 다름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지정물류사	2,000~3,000	해당없음	주단위 결제	상품 미공급시	

※ 인테리어 비용은 같은 평수라도 점포의 형태, 노후정도, 구조등에 따라 상기의 금액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견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 제외견적 : 추가 간판, 어닝 공사, 가스공사, 철거, 화장실공사, 브로아(닥트), 냉/난방기, 승압공사, 창호공사(샷시), 온수기, 소방설비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2,20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착공 전 3일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①	선정 기준②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조언은 할 수 있으나 가맹점 입지의 최종 책임은 모두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①	계약·채용 기준②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남다른 사명감과 철학을 갖출 것. 개설 및 운영자금이 충분할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신체 건강하며, 의사소통 능력(외국인) 있을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닭강정총각]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6,600	총액의 50%	30%	2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 +5일	오픈 3일전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지급대상②	금액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④
상표사용료	이심전심(주)	-				계약연장 및 브랜드 확장에 따라 부과할 수 있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이심전심(주)	전체광고비 50:50	실시할경우	미실시	실시 후	브랜드, 상품광고
		이심전심(주)	해당없음	실시할경우	미실시	실시 후
판촉분담금	이심전심(주)	행사별로 분담, 지역별로 분담 등	실시할경우	미실시	실시 후	
교육훈련비	이심전심(주)	상황에따라 다름	교육 실시 7일 이전	교육 전	교육 후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⑤	이심전심(주) 또는 지정업체	매장별 상황에 따라 다름	간판 변경 전 3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교체 보수 내용에 따라 다름	교체·보수 전 3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외 2개사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8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60%				38~39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물품대금	지정업체	주문량에 따라 다름	매주 월~일요일 사용대금 차주 수요일까지 지급	주문전	주문후	
POS 사용료	미정	선택	선택			
지연이자⑥	이심전심(주)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 또는 기타 대금지급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①(기준: 2023년)	내용②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③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④	해당없음

[2023년도 닭강정총각의 가맹점이 없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의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금액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③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④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⑤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시
월정 로열티					계약연장 및 브랜드 확장에 따라 변경 부과할 수 있음
물품대금	지정업체	매주 월~일요일 사용대금 차주 수요일	주문 전	주문 후	
광고부담금	계약조항에따름	실시할 경우	미실시	실시후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닭강정총각]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이심전심(주)]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비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는 [닭강정총각]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도 2개월 전에 당사에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승인을 얻어야하며, 기본적으로 당사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3~34]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노하우 전수와 오픈지원 완료 시 소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로 당사에 직접 입금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닭강정총각]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업표지를 사용한 간판 등을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교부 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자진해서 폐기처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료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상 명시된 바에 의해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닭강정총각]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닭강정총각의 설비 및 상품, 원·부재료 등에 대한 업체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 시 권장 상품들이 새로운 상품들이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자체 시공할 경우 디자인 및 설계비용은 2,200천원(부가세 포함)의 감리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②		구분③
		상한	하한	
1				
2				
3				

[당사에서 2022년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요 품목의 직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알 수 없습니다. 별첨 3-2의 원·부자재 리스트에서 품목 확인은 가능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닭강정총각]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④	비고
계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닭강정총각]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①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②	금액③	비고④
계					

2) 당사가 [닭강정총각]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①		제한내용 및 조건②	위반시 책임③	비고④
순살후라이드	라이스후라이드 한 마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메뉴 추가 및 변경에 대해서는 본사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라이스후라이드 반마리			
닭강정	매콤한맛 한마리			
	매콤한맛 반마리			
	간장맛 한마리			
	간장맛 반마리			
	크림맛 한마리			
토핑	김말이튀김			
	야끼만두			
	고구마튀김			
	감자튀김			
치킨무				
음료수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①	상품・용역명②	제한내용 및 조건③	위반시 책임④	비고⑤
미성년자	주류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가맹본부와의 협의사항이 아니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권별, 지역별 판매 가격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장 판매가격에서 가격이 변동을 요청할 경우 당사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절차의 위반시 가맹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용역명①	권장가격(단위: 원)②	가격 통보 방법	비고③
라이스 후라이드	7,900(한마리)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16.1월 기준
	4,900(반마리)	〃	〃
매콤한맛 닭강정	7,900(한마리)	〃	〃
	4,900(반마리)	〃	〃
간장맛 닭강정	7,900(한마리)	〃	〃
	4,900(반마리)	〃	〃
크림맛 닭강정	7,900(한마리)	〃	〃
김말이튀김	1,000원(1인분)	〃	〃
야끼만두	1,000원(1인분)	〃	〃
고구마튀김	1,000원(1인분)	〃	〃
감자튀김	1,000원(1인분)	〃	〃
치킨무	1,000원(250g팩)	〃	〃
음료수	6,00(240ml캔)	〃	〃
	1,000(500ml pet)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 전문 가맹사업	닭강정총각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①	설정방법②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8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 지역은 반경 800m를 기준으로 1점포 입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차선 이상 도로 및 하천, 구릉 등과 부동산 공법상 지역, 지구개발로 인한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나 이로 인한 새로운 쇼핑가 및 집객시설 등 상권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2. 군, 읍, 면 소재지에 입점하는 경우는 지역 상권에 비해 인구의 밀집도가 현저히 낮으므로 면 단위를 기준으로 특약에 의해 영업지역을 분할키로 한다. 3.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에 입점하는 경우는 입점시 임시로 영업지역을 분할, 적용하며, 차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위 1, 2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지역 분할을 확정 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명	제한내용	위반시 책임	비고
영업지역외의 소비자 (타지역 닭강정총각 가맹점사업자)	닭강정총각의 모든 상품	배달판매	1회 위반: 서면 경고 2회 위반: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손해배상액 청구가능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타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닭강정총각" 브랜드 이미지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닭강정총각'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닭강정총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①	영업표지	취급품목②	가맹점과의 구분③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①	유통업체명②	주소	취급품목③	가맹점과의 구분④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②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닭강정총각”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상품(메뉴 등)을 가맹본부인 당사는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닭강정총각]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

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4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1항
○ [닭강정총각]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4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 임의 변경하는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교육 • 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등의 조달과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 및 품질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제공 및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9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9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가맹계약의 **즉시해지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수정에 관하여 합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항없음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계약의 수정에 있어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수정 본 계약이 유효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계약의 내용은 무효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 가맹점계약자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매 조건②	환매 절차③	비고④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②	양도 절차③	비고④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창업지원팀 (02-3785-1425)

[본 가맹계약 기간 중 양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교육 및 훈련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 및 훈련비등 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①	가능 여부(조건)②	이전 범위③	절차④	기타 의무사항⑤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5일 이내에 서류 검토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전국 지역 내에서] 귀하가 [닭강정총각]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①	경업허가 절차②	비고③
○ 닭강정집, 치킨집, 치킨전문점 등의 동종업종의 영업	경업 불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닭강정총각]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10시간 이상 영업	1주일에 6일 이상 영업. 다만, 연속되지 않은 휴업으로 주5일도 가능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경우 가맹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②	대체 가능 인력③	비고④
3명 이상(매장 규모(평형)에 따라 다름)	직원 근무 가능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권한을 갖춘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매장 경영평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닭강정총각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rowspan="2">구분①</th><th rowspan="2">광고
성격②</th><th colspan="2">부담비율</th><th rowspan="2">분담 절차④</th><th rowspan="2">비고⑤</th></tr>
<tr><th>본사부담③</th><th>가맹점부담</th></tr>
<tr><td rowspan="3">광고
전체 행사</td><td>브랜드
홍보 또는
상품광고</td><td>광고비의
50%</td><td>광고비 50%
중 가맹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산정(광고비
50%/가맹점
수)</td><td rowspan="3">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광고비 분담금은 광고 시행시 청구하고, 2주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td><td rowspan="3">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td></tr>
<tr><td>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td><td>광고비의
50%</td><td>광고비 50%
중 가맹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산정(광고비
50%/가맹점
수)</td></tr>
<tr><td>가맹점
모집광고</td><td>전액 부담</td><td>없음</td></tr>
<tr><td>판촉행사</td><td colspan="3">기타 개별행사</td><td>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td><td>월별, 계절,
분기별 판촉
행사</td></tr>
<tr><td>할인카드·멤버십
제휴서비스</td><td colspan="3">행사에 따라 달라짐</td><td>진행사항 없음</td><td>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td></tr>
</table>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각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당사는 광고 및 판촉행사에 있어서 2020년 12월까지 가맹점 자체 홍보나 광고, 판촉행사 외에 가맹점에게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으며, 전액 가맹본부 비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승인을 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한 비용의 일부를 당사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가맹점 개설 및 운영을 위해 본사로부터 교육 및 훈련 받은 운영교범, 매뉴얼 등을 지칭하며, 해당 영업비밀은 당사 브랜드의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가맹본부만의 영업비밀입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은 별도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의 위약금에 관하여여서는 아래와 같이 가맹계약서 제 33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① 아래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7조 제1항 가맹비의 100%를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제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7항을 위반하여 가맹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제1항 , 제4항 제1호의 대금결제를 연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물품 등을 직접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된다.
5. “가맹점사업자”가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받지 못한 상품 등의 판매를 하거나 또는 물품 등을 사입 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동의 없이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7일 이상 휴 업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 해지 또는 만료로 인하여 가맹계 약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영업표지의 사용을 철거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아래 각 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7조 제1항 가맹비의 70%를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 제7항을 위반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1항의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제3항 의 “가맹본부” 임직원의 정당한 점포 출입을 막은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물품을 가공하거나,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제조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2항의 매뉴얼을 위반하거나 제4항의 “가맹본부”의 정당한 개,보수 지시를 거부한 경우

③ 아래 각 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7조 제1항 가맹 비의 50%를 “가맹본부”에 위약 금으로 납입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100일 이내에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본 계약시 가맹비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되는 금액의 가맹비로 책정하여 위약금을 부과한다.

⑤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①	소요비용②
합계		47일 내외	[14p~17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7 당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정보공개서 열람후 14일, 계약서수령 후 2일이 경과 되면 계약가능
피해보상보험증제공	- 가맹금 입금((주)서울보증보험 피해보상보험 가입)	D-29(1일)	5,500(당사입금)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에 따라 다름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 간판(기본)공사 포함	D-24~5(20일)	13,160~16,280 입금(공사비 80% 입금)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교육전 1,100(당사입금)
초도물품 신청	- 인테리어 종료일에 맞춰 물품입고 - 오픈판촉물 신청 및 입고	D-1	1,100~1,650입금(오픈판촉물)
기계 및 주방용품 구입	- 당사에서 구입 또는 가맹사업자 직접 구입	D-5~3	8,800입금(기계 및 주방용품 입고)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완료	D-3	3,290~4,070 입금(공사비 2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교육의 수료상태, 시설공사시 점포의 특성, 가맹점사업자의 인허가 사항 취득 사항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개설관련비라 함은 당사에 입금되는 비용으로써 가맹비와 보증금을 제외한 비용을 말함 (인테리어+간판+주방 설비 및 집기+초도물품+판촉물 등)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제공 예정하고 있으므로, 가맹금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할 시 가맹본부는 보증금 관련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

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은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에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전에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관할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②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③	지급절차④	비용부담 제외사유⑤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①	주요 내용②	지원조건③	지원기간	지원금액④	비고⑤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해당없음				

무상대여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①	절 차②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또는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협의후 부담	문의: 서비스운영팀 (02-3785-143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상황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가맹점 부담	문의: 서비스운영팀 (02-3785-1435)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닭강정총각]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①	신용제공자②	금액③	신용 형태④	신용제공 조건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정책①	주요 내용②	지원조건③	지원기간	지원내용④	비고⑤
조기 안정화 자금지원	해당없음				
매출부진 경영지원	해당없음				

당사는 별도의 경영상 지원활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 홍보 또는 비용감면 등의 지원을 협의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닭강정총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①	기한	비고②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서비스교육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계약기간중 필요시	상황에 따라 다름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닭강정총각]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0시간 1일 (2일이상)	1,100	교육시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가감이 가능
보수 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상황에 따라 다름	교육비용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진행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훈련의 대상 : 가맹점사업자 , 종업원 2인 등 합 최소 3인 이상
- 대리인의 교육 여부 : 가맹점사업자는 대리 교육이 불가하나, 종업원 교육은 가능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 9 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가맹점 오픈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보수교육 불참 시, 당사는 물품공급의 중단, 계약갱신의 거절, 위약금의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③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창업지원팀(02-3785-142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1. 재무상태표 (2021년 12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2. 손익계산서 (2021년 12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3. 재무상태표 (2022년 12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4. 손익계산서 (2022년 12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5. 재무상태표 (2023년 12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6. 손익계산서 (2023년 12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가맹점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연번	가맹점명	가맹점 사업자 명	계약체결일	매장연락처	가맹점사업자 주소지	비고

별첨3. 원·부재료 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